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다변화와 시사점

정원석 연구위원, 마지혜 연구원

- 영국은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인저축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확대 개편하였음.
 - 2015년에는 생애 최초 주택마련지원을 위해 주택마련 목적의 적립금에 대응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Help to Buy: ISA를 도입함.
 - 2016년에는 핀테크 투자활성화와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핀테크 관련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Innovative Finance ISA를 도입함.
 - 2017년에는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60세 이후 적립금 인출 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Lifetime ISA를 도입함.

-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자산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노후자금마련 등을 위한 저축유인 제도가 존재하나 실질적인 혜택은 다소 미흡함.
 -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ISA 경우 낮은 수익률로 인해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미미함.
 - 주택마련 자금 및 노후자금마련에 대한 세제혜택 역시 근로소득자의 46.8%에 이르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실질적인 저축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함.

- 따라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저축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Lifetime ISA 혹은 Help to Buy: ISA처럼 노후자금마련 혹은 주택마련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저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저축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핀테크 투자와 같이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영국은 저축률 제고를 위해 기존 비과세 저축 제도를 통합하여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였고, 이후 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음.
 - 1999년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ISA는 많은 호응을 받아 2008년 영구화되었음.
 - 첫째 900만 명 이상이 ISA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 1,460만 명까지 가입자 수가 증가함.
 - 2015년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Help to Buy: ISA를 도입하였음.
 - 2016년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Innovative Financial ISA를 도입함.
- 특히 2017년 4월부터는 투자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하는 Lifetime ISA를 도입하였음.
 - 국민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를 통해 생애 전반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함.¹⁾
 - Lifetime ISA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5%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기존 ISA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후 적립금을 인출해야 함.
 - 60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전체 출금액에 대해 25%의 높은 세율로 과세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ISA 확대 정책이 우리나라 저축유인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 역시 노후빈곤, 주택마련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 등 영국과 유사한 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국 사례는 우리나라 저축유인 정책 방향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

1) 제도 도입목적은 영국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dividual-savings-accounts-lifetime-isa>.

2. 영국의 ISA 다변화



가. Help to Buy: ISA

■ Help to Buy: ISA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자격은 16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함.

- Help to Buy: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생애 최초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임.
- 시중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은 2030년까지 지급됨.
- 가입단위가 개인이므로 신혼부부 등의 경우 부부 모두가 Help to Buy: ISA를 개설해 생애 최초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 시 부부가 받은 보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음.

■ Help to Buy: ISA의 편입상품은 기존 예·적금 상품위주의 Cash ISA에 준하며, 납입액의 25%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

- Help to Buy: ISA 계좌에 월 최대 200파운드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납입액의 25%를 보조금으로 지급함.²⁾
 - 보조금은 가입자 적립액 12,000파운드에 대해 3,000파운드까지 지급함.
 - Help to Buy: ISA 적립액은 해당 액수만큼 ISA 연간 납입한도액(20,000파운드)³⁾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적립된 원금의 이자 그리고 보조금은 인출 시 비과세됨.

■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Help to Buy: ISA에 적립된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²⁾ 2017년 3월 21일 환율 기준으로 영국 1파운드는 1,388.58원임.

³⁾ 무제한적인 비과세 혜택을 막기 위해 ISA의 비과세 저축한도는 매해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지며 2017년 비과세 한도는 가입자 한 사람당 연간 20,000파운드임.

- 런던 시내의 경우 450,000파운드, 런던 이외 지역의 경우 250,000파운드 이하의 실거주 목적 주택 구매 시 보조금을 포함한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수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은 정부에 반납하지만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됨.

나. Lifetime ISA

■ Lifetime ISA는 2017년 4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과세기간 말에 연간 납입액의 2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함.

- Lifetime ISA 연간 납입한도는 4,000파운드로 연간 보조금 한도는 1,000파운드임.
 - 연간 납입한도 이외에 월간 납입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기존 ISA와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 상호금고 등에서 Lifetime ISA를 개설할 수 있음.
 -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ISA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도를 설계함.
 - 기존 15,240파운드인 연간 ISA 납입한도는 Lifetime ISA의 한도를 포함하여 20,000파운드로 상향조정됨.
 - 따라서, Lifetime ISA는 기존 ISA에 계좌를 추가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 가입 자격은 18~40세로 한정되며 보조금은 가입자가 50세가 되는 해까지 지급함.

- 18세부터 50세까지 해마다 4,000파운드씩 적립 시 매해 1,000파운드씩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납입원금 128,000파운드와 보조금 32,000파운드를 합친 160,000파운드가 적립됨.
 - 32년간 매해 3%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총적립금은 약 250,000파운드가 됨.

■ 상시 입출금이 가능한 ISA와 달리 Lifetime ISA에 적립된 자금은 생애 최초 주택마련 혹은 60세 이후 인출조건을 만족해야만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⁴⁾

- 생애 최초 주택은 영국 내 450,000파운드 이하 주택이어야 함.
- 60세가 되어 Lifetime ISA 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자금 사용 용도는 제한이 없음.
 - Lifetime ISA에서 인출한 자금은 연금은 물론 생활비로도 사용이 가능함.

4) Help to Buy: ISA와 기능상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Help to Buy: ISA 적립금은 Lifetime ISA로 이전이 가능함.

- 인출조건 만족 시 납입금액과 운용수익 그리고 보조금 모두에 대해 비과세됨.
- 인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출금이 가능하나 전체 출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 영국정부는 Lifetime ISA가 장기저축장려를 위한 제도이나 금융소비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비교적 가벼운 과세(small charge) 후 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⁵⁾
 - 단, 사망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경우 보조금을 포함한 전액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음.

다. Innovative Finance ISA

- Innovative Finance ISA(이하 'IF ISA')는 P2P⁶⁾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ISA를 공급하여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영국의 핀테크 및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4월 도입함.
 - 지금까지는 ISA투자자가 P2P 금융상품 제공자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IF ISA 도입으로 P2P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해짐.
 - IF ISA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P2P 제공자에 대한 규제와 ISA 제공자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투자자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표 1〉 영국 ISA의 현황

구분	도입시기	도입목적	혜택방식	특징
Cash ISA	1999	저축장려	비과세	예·적금 등 원금 보장상품 투자
Stock ISA	1999	저축장려	비과세	주식, 펀드 등 원금 비보장 상품 투자
Junior ISA	2011	미성년자 저축장려	비과세	18세 이전 가입가능 18세 이전 인출불가
Help to Buy: ISA	2015	주택마련	보조금, 비과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혜택 부여
Lifetime ISA	2017	노후자금마련	보조금, 비과세	60세 이후 적립금 수령 시 혜택
Innovative Finance ISA	2016	핀테크 강화	비과세	핀테크 투자로 고수익 추구

주: Cash ISA와 Stock IS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원석(2015. 2. 2) 「KiRi 포커스」 참조.

5) HM Treasury(2016), Lifetime ISA.

6) Peer to Peer.

3. 우리나라의 저축장려 정책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축장려 정책으로는 ISA, 세제적격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⁷⁾을 들 수 있음.

- 서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ISA를 도입하였음.
 - 예·적금상품과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5년 이상 예치 시 운용수익(최대 200만 원)에 대해 비과세함.
 - 은행, 증권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신탁형 ISA와 금융회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일임형 ISA가 있음.
 - 7년 납입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던 재형저축은 ISA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음.
- 또한,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을 운영하고 있음.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최대 400만 원)의 12%(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5%)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고 있음.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나 일시금 수령 시 15%로 과세함.
- 주택자금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운영하고 있음.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당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불입액(최대 240만 원)의 40%(최대 96만 원)를 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소득공제)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축장려 정책은 필요한 계층에 충분한 저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일임형 ISA의 출시 이후 평균수익률은 2.08%에 불과하여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체감하는 세제혜택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⁸⁾
 -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즉 투자(저축)유인 효과가 클 것이나 낮은 수익률로 인해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투자(저축)유인 효과는 미미함.
 - 낮은 수익률과 그로 인한 낮은 수준의 세제혜택으로 인해 ISA 가입자는 2016년 11월 241만

⁷⁾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청약저축과 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함.

⁸⁾ ISA 다모아(<http://isa.kofia.or.kr/>) 2017년 1월 31일 기준 대표 일임형 ISA의 단순평균 수익률.

명을 정점으로 12월 239만 명 그리고 1월 236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체 근로소득자의 46.8%가 과세미달자⁹⁾인 상황에서 주택마련 저축과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저축 확대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핀테크 투자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상품 및 세제혜택은 존재하지 않음.

〈표 2〉 우리나라와 영국 저축장려 정책 비교

구분	영국	대한민국	특징
자산형성	비과세 (Cash and Stock ISA)	비과세 (ISA)	우리나라는 의무가입기간과 비과세 한도 존재
노후소득원마련	비과세, 보조금 (Lifetime ISA)	저율과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미달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주택마련	비과세, 보조금 (Help to Buy: ISA)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미달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핀테크 투자	비과세 (Innovative Finance ISA)	-	고수익추구 가능

4.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영국 정부는 제도를 통해 저축을 강제하기 보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저축 유인을 제공하여 저축을 유도하고 있음.

- 노후소득 관련 정책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가입¹⁰⁾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 반면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화(Annuitization) 수령 의무를 폐지하였음.
- Lifetime ISA 역시 보조금과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60세까지 기다려야 하나 60세 이후 인출 시 자금사용에는 제한이 없음.
 - IF ISA와 Help to Buy: ISA 역시 비과세 및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저축유인 제공을 통한 저축장려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9) 국세통계연보(2016)의 연말정산 신고 정보를 재구성.

10) 직장이 있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가입거부가 가능함.

- 이러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저축유인 제공 정책은 개인이 모든 경제적 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저축장려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축유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저축 및 금융투자 지원 제도인 ISA의 경우 낮은 수익률로 인해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임.
 - 금융상품의 수익률 제고가 저축 및 금융투자 확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저성장·저금리의 고착화로 단기간 내에 금융상품 수익률 제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역시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실질적인 저축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영국의 Lifetime ISA 혹은 Help to Buy: ISA처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까지 실질적인 저축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핀테크 관련 투자상품에 ISA 등을 통한 비과세 혜택 부여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핀테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단, 보조금 혹은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적용할 경우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kiri](#)